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규정

제정 1976. 4. 6 규칙 제 390호
개정 1979. 11. 2 규칙 제 508호
1981. 3. 24 규칙 제 551호
1990. 2. 15 규칙 제 789호
1992. 3. 18 규칙 제 861호
2001. 11. 21 규칙 제1205호
2006. 2. 27 규칙 제1530호
2016. 3. 29 규칙 제2032호
2024. 2. 1 규칙 제249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(이하 “학술림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개정 2006.2.27., 2016.3.29.]

제2조(직무) 학술림은 산림과학에 관한 시험연구, 학생실습과 연구결과 보급 등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[개정 2006.2.27.]

제3조(학술림장) 학술림에 학술림장을 두되,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[개정 2006.2.27., 2016.3.29., 2024.2.1.]

제4조(조직) ① 학술림에 연구부와 행정실을 두고, 전남 광양에 남부학술림, 경기도 광주에 태화산학술림, 수원에 칠보산학술림 등 지방 학술림을 둔다. [개정 2006.2.27.]

②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 [개정 2006.2.27., 2024.2.1.]

③ 남부학술림에는 남부학술림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이나 법인4급 이상 농림식품직으로 보하고, 학장이 임명한다. 그 밖의 지방 학술림에는 소장을 둔다.[개정 2006.2.27., 2024.2.1.]

④ 연구부는 학생실습과 실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⑤ 행정실은 관인관수, 기획, 서무, 회계와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.[개정 2024.2.1.]

제5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학술림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[개정 2006.2.27.]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학술림장이 된다.[개정 2006.2.27., 2024.2.1.]

② 위원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부학장, 수목원장, 산림과학부장, 행정실장 및 학술림 연구 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[개정 2006.2.27., 2024.2.1.]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술림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[개정 2006.2.27.]
2. 학술림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[개정 2006.2.27.]
3. 그 밖에 학술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[개정 2006.2.27., 2024.2.1.]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그 밖에 학술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과 협의 하여 학술림장이 정한다. [개정 2006.2.27., 2024.2.1.]

부칙(제390호, 1976.4.6)

이 규정은 197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08호, 1979.11.2)

이 규정은 197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51호, 1981.3.24)

이 규정은 198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789호, 1990.2.15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부칙(제861호, 1992.3.1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제1205호, 2001.11.2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01530호, 2006.2.2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032호, 2016.3.2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493호, 2024.2.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